

의안번호	2214206
의 퇴 인	김기웅의원
회 답 일	2026. 3. 26.
추 계 번호	25B61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전기통신사업자는 외교부장관이 「여권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한 국가나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이 경우 “이용자의 가입일”은 “이용자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일자”로 봄(제4항 신설)	의무규정
2	안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 및 외교부장관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함(제1항)	재량규정
3	안 제8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수사기관등 및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3	안 제8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2. 상세 사유

□ 현행법¹⁾은 수사기관 등이 재판, 수사 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수사기관 등은 일정 기간 이내에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등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통지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1)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죄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①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
3.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짜

제8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① 수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

문자메시지 건당 약 930원, 우편 건당 약 3,750원으로, 해당 비용은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수수기관 등(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부담하고 있음

[표 1] 현행법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2023 ~ 2025년(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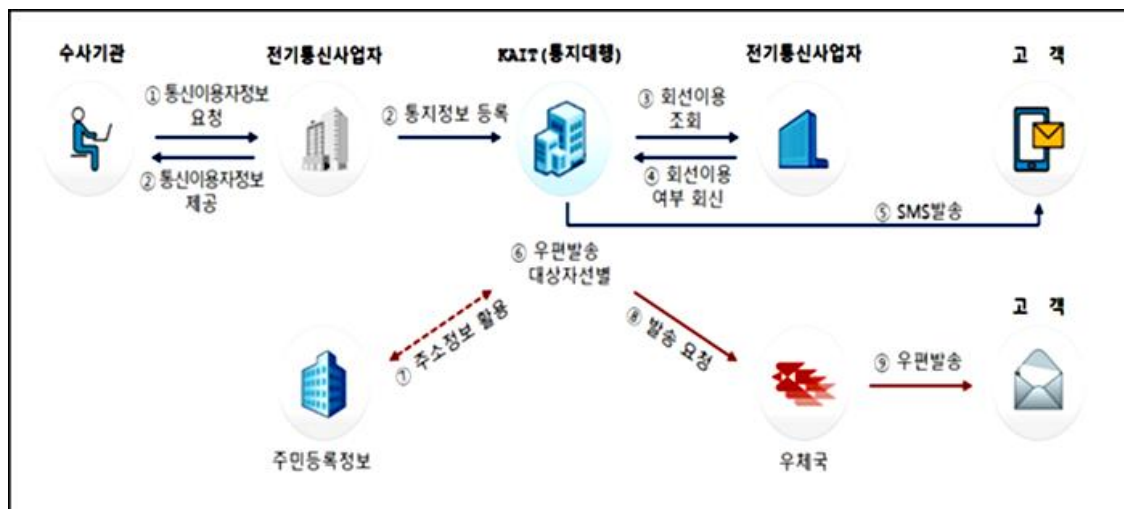
(단위 : 건)

구 분		'23년	'24년		'25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검 찰	전화번호 수	739,802	263,546	266,904	251,801
	문서 수	80,643	52,946	58,480	65,189
	문서1건당 전화번호 수	9.2	5.0	4.6	3.9
	전화번호 수				
경 찰	전화번호 수	1,402,402	1,033,515	971,251	1,195,430
	문서 수	436,099	394,807	391,649	434,471
	문서1건당 전화번호 수	3.2	2.6	2.5	2.8
	전화번호 수				
국정원	전화번호 수	10,753	9,595	14,341	9,676
	문서 수	1,288	1,287	1,406	1,176
	문서1건당 전화번호 수	8.3	7.5	10.2	8.2
	전화번호 수				
공수처	전화번호 수	797	250	2,728	94
	문서 수	87	53	100	29
	문서1건당 전화번호 수	9.2	4.7	27.3	3.2
	전화번호 수				
기타 기관*	전화번호 수	58,888	54,212	50,900	48,896
	문서 수	30,675	27,751	27,697	26,627
	문서1건당 전화번호 수	1.9	2.0	1.8	1.8
	전화번호 수				
합 계	전화번호 수	2,212,642	1,361,118	1,306,124	1,505,897
	문서 수	548,792	476,844	479,332	527,492
	문서1건당 전화번호 수	4.0	2.9	2.7	2.9
	전화번호 수				

*기타 기관 : 군 수사기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 법무부, 고용노동부, 식약처 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 2] 현행법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 절차도



자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개정안은 외교부장관도 여권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국가나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통지 비용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여권법」 2)에 따라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한 국가 및 지역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 여권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국가·지역 현황

	국가·지역명
국가 (9개)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말리
지역 (14개)	①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러시아 일부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란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⑤팔레스타인 가자지구, ⑥미얀마 일부지역(산주 북부·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⑦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⑧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이스라엘: 레바논 접경 4km 구간 / 레바논: 이스라엘 접경 5km 구간), ⑨레바논 일부지역(남부 주, 나바티예 주), ⑩콩고민주공화국 일부지역(북키부주, 남키부주) ⑩콩고민주공화국 일부지역(북키부주)⑪감보디아 일부지역(캄פות주 보코산 지역, 바벳 시, 포이펫 시), ⑫니제르(수도 니아메 제외), ⑬베네수엘라(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 / 각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지역 제외) ⑭시리아 일부지역(골란고원 일부-레바논 접경 및 UNDOF 분리선 4km 이내-제외)

자료: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외교부고시 제2026-2호)

- 2)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①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다만, 현 시점에서는 향후 외교부장관이 여권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국가·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횟수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해외안전 로밍문자 서비스³⁾의 경우 이동통신 3사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

3) 해외로밍을 신청한 국내 통신사 가입자에게 외교부·재외공관 등에서 제공하는 안전정보를 문자(SMS)로 전달하는 서비스